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37
----------	-------

발의연월일 : 2026. 3. 20 .

발 의 자 : 정동만 · 김선교 · 김성원
이인선 · 김재섭 · 서일준
박성민 · 구자근 · 이상휘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인·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는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허가 의제 대상에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u><신 설></u> ② · ③ (생 략)	<u>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u> <u>2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u> <u>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u> <u>의</u> ② · ③ (현행과 같음)
---------------------------------------	---